

제 255회 정례회
2006.12.14(목)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 연기봉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3. 제안이유

가. 음반·비디오·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그 신고 수수료는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음.

나. 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이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각기 시행되고

다. 아울러 위법에 의해 음반·비디오·게임물 등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, 그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「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: 20,000원

나.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: 10,000원

- 다. 음반·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: 20,000원
- 라. 음반·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: 10,000원
- 마.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: 20,000원
- 바.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: 10,000원

5. 검토의견

음반 및 음악영상물·비디오·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및 신고수수료는 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음.

동법이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등 3개 법안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※ 3개 법률 제정 2006.4.28, 3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.10.27

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음반·음악영상물, 비디오물,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는 20,000원, 변경신고 수수료는 10,000원으로 정하고 있음.

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금액이나 업무의 변동은 없고, 근거 법령이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견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.